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

제출년월일 : 2000.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提案理由

○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 99년 지방세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해석이 불분명 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의 구축을 마련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의 일환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국가유공자에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안 제4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면제로 확대함(안 제10조)
- 임대주택 감면조항중 관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 농촌특산품생산단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
-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3. 參考事項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세회13400-819, '99.12.20)-붙임
- 입법예고 : 필요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중상이자”를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한” 을 “감면신청하는” 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제1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한” 을 “감면신청하는” 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10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를 “동법 제28조의5의”로 한다.

제17조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7장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p>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 ----- ----- ----- -----</p>
<p><u>제17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 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 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제18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p> <p>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p> <p>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365/영업기간(일수)</p> <p>3.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u>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u>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u>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p>< 신 설 ></p>	<p>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제4항 및 동조제5항</u>의-----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u>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u>에----- 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u>에----- <p>제34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u>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u>에 의한 <u>과밀억제권역</u>(이하 이 조에서 “<u>과밀억제권역</u>”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u>본사</u>”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u>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u>에 의한 <u>수도권</u>(이하 이 조에서 “<u>수도권</u>”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p>

현행	개정안
<p>제3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p>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제35조(시행규칙)----- ----- -----.</p>

사 승

☎ 200-79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61)249-3331, 249-2884 FAX 249-4029
 세무회계과 과장 조광수 담당사무원 김응기 담당자 박광석

문서번호 세회 13300 - 922

시행일자 1999.12.29 (1년) 공개

받는곳 받는곳 찰즈

참 조 회계담당과장

년 월 일	문 사	번호	지 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제도	
	점 수	일자 시각		2000. 1. 03	과 장 영호
번호			결 재		
처 리 과				공 관	담당주사 김응기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증 개정기준(안)」 시달

1.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입징수액계산서 및 지출계산서의 지정사항」 중 개정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소관 금고의 출납계산서의 지정사항」 중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 지방회계제도의 일부 불합리적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증 개정기준(안)」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시·군에서는 등 기준에 의거 골우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 기준안대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증 개정기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최 현



받는곳 : 더(01-13)

地方自治團體財務會計規則改正基準(案)

1. 改正事由

- 지방자치법 개정('99. 8. 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결산시기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소관 세입징수액계산서 및 지출계산서 지정사항 변경내용 반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主要改正內容

- 직속기관등 제1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시 소속 하부기관 및 시군구에 재배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9조제4항)
- 예산편성, 배정, 집행내용등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예산원부와 세출예산정리부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개정('99. 8. 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동내용을 반영(안 제30조)
-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여비 및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공청회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은 날인없이 서명으로 현금수령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령자의 불편해소(안 제128조)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소관 지출계산서의 지정사항 및 금고출납 계산서의 지정사항중 일부개정내용 반영(안 제130조, 제13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의 근거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발주지자체에서 세무관서에 당해계약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37조의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기준(안)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③ : 현행과 같음 <u><신 설></u></p> <p>제20조(예산의 정리) ①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u><신 설></u></p>	<p>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③ : 생략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군·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u>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20조(예산의 정리)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예산담당관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 사업소, 출장소 등 제1관서의 장이 시·군·구에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관리사업장·도출장소장 등이 시·군·구에 예산재배정하는 경우</p> <p>○ 시·도에서 예산편성 및 배정, 세출예산의 집행 등에 실제로 전산입력 처리하고 있으며 ○ 예산원부와 세출예산정리부를 원안대로 전산입력하는 경우 장부 비치·정리를 생략토록 개선</p>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생략) ②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같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0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금고 또는 시·도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 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현행과 같음) ②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p> <p>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같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u>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30조(지출계산서).....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p>	<p>○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개정('99. 8. 31)에 따른 결산시기의 조정</p> <p>○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여비와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공청회, 출연자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의 경우 서명으로 대가 수령이 가능토록하여 수령자의 불편해소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p> <p>○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소관 세입징수액계산서 및 지출계산서의 지정사항과 금고의 출납계산서의 지정사항중 개정지정사항 반영 · 증명기간 : 1월 → 3월로 조정</p>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②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 <u>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u> </p> <p>제131조(출납계산서) ① <u>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u> </p> <p>② (생략)</p> <p>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u>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받아야 한다.</u></p>	<p>○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을 집행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근거과세 근거마련 ※ 국세청 건의사항 반영</p>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신설></p> <p>제99조(금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u>채신관서의 조합원을 이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u></p>	<p>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9조(금고의 구분) ① (생략)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u>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u></p>	<p>○ 농·축협 회원조합의 금고업무 일부 대행범위를 명확하게 구분</p>